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28

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정을호·추미애·정태호

한준호 • 전현희 • 진성준

김동아 · 강유정 · 강경숙

김준혁 · 백승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,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, 선도 및 징계,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교의 장이 요청하거나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.

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신고 접수를 받으면 학교에서 최대 3주의 사안조사 후 최대 4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. 그런데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4주가 넘는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. 이러한 심의위원회 개최지연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

(안 제1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경우에"를 "경우에는 그 요청·신고·보고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・운영)	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・운영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	②	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
하는 <u>경우에</u> 회의를 소집하여	<u>경</u> 우에는 그 요청·신고·		
야 한다.	보고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		
	<u>에</u>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